



자동차사고 통지지연 현황 및 특징

송윤아 연구위원

요약

■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는 보험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, 사고통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. 따라서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한 비율은 FY2010 기준 58.2%에 불과함. 공정한 과실상계, 신속한 보험금 지급, 부정청구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사자의 사고발생통지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나, 현재 사고통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.

- 「상법」제657조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당사자가 사고를 인지한 경우 사고내용을 ‘지체 없이’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, 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.
- 다만 「민법」제766조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명시하고 있음.
 - 「민법」제766조에 의거하여,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,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.

■ FY2010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675,236건을 분석한 결과,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한 비율은 58.2%, 24시간 이내에 통지하는 비율은 77.2%에 불과할 정도로 사고통지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.

- 사고발생 3일 이후에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12.3%이며, 10%가 사고발생 4일 2시간 20분 이후에, 5%가 사고발생 12일 5시간 30분 이후에 통지함.

〈표 1〉 FY2010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

사고통지 소요시간	구성비
1시간	53.2%
2시간	58.2%
3시간	61.0%
6시간	64.7%
12시간	68.4%
24시간	77.2%
2일(48시간)	83.6%
3일(72시간)	87.7%
4일 2시간 20분	90%
12일 5시간 30분	95%
503일 1시간 42분	100%
관찰값 수	675,236건

■ 사고형태별로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,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차대차사고가 69.1%, 차대인사고가 61.3%, 차량단독사고가 26.6%로, 차량단독사고 일수록 사고통지 소요시간이 긴 편임.

-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차대차사고가 85%, 차대인사고가 80.3%, 차량단독사고가 54.6%임.
- 반면, 사고발생 후 3일 이후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차대차사고가 6.4%, 차대인사고가 10.3%, 차량단독사고가 28.8%임.
 - 차대차사고의 5%는 사고발생 3일 23시간 23분 이후에, 차대인사고의 5%는 사고발생 7일 16시간 16분 이후에, 차량단독사고의 5%는 사고발생 42일 17시간 20분 이후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함.

〈표 2〉 FY2010 사고형태별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

사고통지 소요시간	사고형태별 구성비		
	차대차	차대인	차량단독
1시간	64.4%	53.6%	21.1%
2시간	69.1%	61.3%	26.6%
3시간	71.6%	64.3%	30.2%
6시간	74.7%	67.9%	35.7%
12시간	77.7%	71.2%	41.2%
24시간	85.0%	80.3%	54.6%
2일(48시간)	90.1%	86.4%	65.1%
3일(72시간)	93.6%	89.7%	71.2%
관찰값 수	438,668건	22,767건	168,980건

■ 보험사기 적발여부별로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을 살펴보면, 사고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을 보험 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보험사기 적발사고가 51.7%, 보험사기 비적발사고가 59.1%로,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고일수록 통지 소요시간이 긴 편임.

-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보험사기 적발사고가 73.4%, 보험사기 비적발사고가 77.7%임.
- 반면, 사고발생 3일 이후에 사고발생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비율은 보험사기 적발사고가 15.1%, 비적발사고가 11.9%임.
 - 보험사기 적발사고의 경우, 사고발생 6일 2시간 41분 이후에 사고발생을 통지하는 비율이 10%, 사고발생 17일 1시간 19분 이후에 통지하는 비율이 5%를 차지함.
 - 보험사기 비적발사고의 경우, 사고발생 3일 23시간 2분 이후에 사고발생을 통지하는 비율이 10%, 사고발생 11일 15시간 55분 이후에 통지하는 비율이 5%를 차지함.

〈표 3〉 FY2010 보험사기 적발여부별 사고발생 통지 소요시간

사고통지 소요시간	보험사기 적발여부별 구성비	
	보험사기 적발사고	보험사기 비적발사고
1시간	46.3%	54.0%
2시간	51.7%	59.1%
3시간	54.7%	61.8%
6시간	58.6%	65.5%
12시간	63.2%	69.0%
24시간	73.4%	77.7%
2일(48시간)	80.7%	84.0%
1일(72시간)	84.9%	88.1%
관찰값 수	76,527건	598,709건

■ ■ 공정한 과실상계, 신속한 보험금 지급, 부정청구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통지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- 사고당사자의 사고통지가 지연될수록 사고의 발생원인 및 발생경위 파악이 어려워져 보험회사의 공정한 과실상계와 신속 정확한 보험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움.
- 또한 손실의 가공·조작·과장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자일수록 사고통지를 지연할 개연성이 있는 한편, 사고당사자의 사고통지가 지연되면 보험회사의 사고발생여부 및 손실규모 파악이 어려워져 보험금 편취를 위한 손실의 가공·조작·과장이 용이해짐. [kiri](#)